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20
----------	------

2020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0월 15일, 김생환 의원 외 13명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생환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운영에 관한 조례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등에 적합하게 정비해 금고 지정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통제와 견제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해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

고, 기금의 경우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함(안 제5조).

다. 금고의 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재공고 입찰 후에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금고의 평가기준을 정함(안 제7조)

마.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금고지정 절차를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

사. 약정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고, 이 경우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보고받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7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5일 김생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에게 의해 의안번호 제1920호로 발의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예규에 부합하게 규정함으로써 금고 지정과 운

영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시·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회계법」 제 38조1)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2), 그리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이하 ‘교육부 예규’)에 따라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금고 규칙’)을 통해 금고지정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교육부 예규가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는데,

동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위임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청의 금고지정에 있어서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직접적인 통제기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안을 지방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3)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금고지정과 관련한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고지정 사무와 관련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제처 의견19-0065,2019.3.15.).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 3)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바. (생략)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카. (생략)

- 동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금고의 수, 안 제5조는 금고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금고의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금고지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금고약정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금고운용과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조례 구성 측면에 있어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에 관한 의견(안 제7조, 안 [별표])

- 안 제7조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안 [별표]에서는 금고지정을 위한 5개의 평가항목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평가기준은 교육부 예규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안 [별표]의 기준 역시 교육부 예규의 평가기준 범위안에서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교육부 예규와 동 조례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교

항 목 ⁴⁾	교육부 예규	조례안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5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8
가-1.국외평가기관	4	4
가-2.국내평가기관	4	4
나.주요 경영지표 현황	17	17
나-1.총자본 비율(안전성)	6	6
나-2.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6
나-3.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	5
2.교육청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7	25
가.정기예금 예치금리	7	7
나.공금예금 적용금리	6	6
다.교육청 대출금리	4	4
라.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5
마. 정기성예금 만기경과 시적용금리		3
3.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18	20
가.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편의성	7	8
나.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5	5
다.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	7
4.금고업무 관리능력	22	23
가.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6
나.금고업무 관리능력	8	8
다.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9
5.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7	7
가.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5	5
나.교육청과의 협력사업	2	2
6. 기타사항	11	
합 계	100	100

○ 다만, 평가항목 ‘3.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중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편의성’은 배점기준

4)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3. 금고지정 평가기준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시·도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교육기관 기여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이 8점으로 교육부 예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바,

자칫 관내지점의 수가 정량적으로만 평가될 경우 기존 금고에 유리한 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금고 지정시 관내지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고 지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안 제8조)

○ 안 제8조는 금고지정을 위해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육부 예규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과반이상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은 교육부 예규⁵⁾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법적합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현재 9명인 서울시교육청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명에서 12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민간

5)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교육감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시·도교육청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다. (생략)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위원의 구성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원장을 기존의 교육행정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그 직급을 상향함으로써 금고 지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책무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2] 금고규칙과 조례안의 심의위원회 비교

구 분	금고규칙	조례안
인 원	9명	9명~12명
위원장	교육행정국장	부교육감
구성	1.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2명	1.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2.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2명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4.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1명	

4) 금고운용 보고에 관한 의견(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수익률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금고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1항 및 제2항), 교육감은 이와 같은 사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 이처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의 운용 상황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 예규 및 현재 교육청의 금고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금고의 운용 상황 등에 대한 교육감의 시의회 보고와 관련하여

여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금의 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 등의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안 제17조제3항은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자금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교특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등) 교육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를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교육감이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의 지정)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업무
2. 각종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 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8.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9.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한 금융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교특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총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채무구조의 안정성	소계	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7)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소계	2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교육청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치금리	(5)
	마. 정기성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3)
3. 교육수요자 및 교육 기관의 이용 편의성	소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다.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업무 관리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9)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소계	7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가.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교육기여 효과, 생태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 포함	(5)
	나.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계획(현금출연만 인정)	(2)

1.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한다.
2.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와 항목5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평가점수가 소숫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